

보도시점 2026. 6. 9.(화) / 배포 2026. 6. 9.(화) 08:30
국무회의 통과 후
별도 공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

-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부과기준을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이하 ‘소비자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하였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였으며,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는 경우에도 최대 50%, 4회 이상인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복 범위반 가중 개정안(3법 공통)]

과거 위반 횟수 (현 위반행위 미포함)	과징금 가중률(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	
	현행(3년 내)	개정안(5년 내)
1회 이상	-	40 ^{초과} ~50% ^{이하} & (2점)
2회 이상	20% & (3점)	50 ^{초과} ~70% ^{이하} & (3점)
3회 이상	40% & (5점)	70 ^{초과} ~90% ^{이하} & (5점)
4회 이상	50% & (7점)	90 ^{초과} ~100% ^{이하} & (7점)

* 시정조치 유형별 가중치 : ▲경고(0.5), ▲시정권고(1.0), ▲시정명령(2.0), ▲과징금(2.5), ▲고발(3.0)

둘째, 임의적인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하였다.

지금까지는 3법 모두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대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는 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 외에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의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는 등,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에 적용됐던 과징금 감경 요소가 정비되었다.

셋째, 표시광고법 과징금의 부과기준율* 체계를 정비하였다.

*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는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하여,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부과기준율·부과기준금액 개정안(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2.0%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1.8%~2.0%	4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8%~1.6%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5%~1.8%	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0.8%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0%~1.5%	2억5천만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
			0.1%~1.0%	5백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과기준금액을 적용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되어,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개정 소비자 3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 개정 방문판매법 과징금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3.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4. 개정 할부거래법 과징금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권순국 (044-200-4405)
		담당자	사무관	이채은 (044-200-4409)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은애 (044-200-4430)
		담당자	사무관	송진규 (044-200-4432)
			사무관	김노윤 (044-200-4431)



현행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1조 제1항 관련)</p> <p>2. 과징금의 산정기준 (생략)</p> <p>가. (생략)</p> <p>나. 소비자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p> <p>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정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 산정기준의 <u>100분의 50</u>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p> <p>다. ~ 라. (생략)</p>	<p>[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1조 제1항 관련)</p> <p>2. 과징금의 산정기준 (생략)</p> <p>가. (생략)</p> <p>나. 소비자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p> <p>-----</p> <p>-----</p> <p>-----</p> <p>-----</p> <p>---- <u>100분의 100</u>-----</p> <p>-----</p> <p>-----.</p> <p>다. ~ 라. (현행과 같음)</p>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 제1항 관련)</p> <p>2. 과징금의 산정기준 (생략)</p> <p>가. (생략)</p> <p>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p>	<p>[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 제1항 관련)</p> <p>2. 과징금의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p>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범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 이내

<신 설>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범위반으로

----- 2점 ----
-----: ----- 40
초과 100분의 50 --

(나) ----- 5년간 2회

----- 3점 ----
-----: ----- 50
초과 100분의 70 --

(다)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범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70 초과 100분의 90 이내

(라) ----- 5년간 ----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생략)

3. 2차 조정

가.·나. (생략)

다. 감경사유 및 비율

(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전액 보상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이상 보상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 ----- 90
초과 100분의 100 --

(2) (현행과 같음)

3.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1) -----

(가) -----
----- 상당
부분 보상하거나,

상당 부분 -----
-----: ----- 10

(나) 위 (가)의 행위가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경률을 축소할

경우: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미만 보상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노
력한 경우: 100분
의 10 이내

(2) ~ (4) 삭 제

(5) (생 략)

수 있다.

<삭 제>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IV. 과징금 산정 기준</p> <p>1. 산정기준</p> <p>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p> <p>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중대성의 정도</th> <th>부과기준율</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 <td>1.6% 이상 2.0% 이하</td> </tr> <tr> <td>중대한 위반행위</td> <td>0.8% 이상 1.6% 미만</td> </tr> <tr> <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 <td>0.1% 이상 0.8% 미만</td> </tr> </tbody> </table> <p>2) 영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중대성의 정도</th> <th>부과기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 <td>4억원 이상 5억원 이하</td> </tr> <tr> <td>중대한 위반행위</td> <td>2억원 이상 4억원 미만</td> </tr> <tr> <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 <td>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td> </tr> </tbody> </table> <p>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p> <p>1)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p>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8% 이상 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 이상 0.8% 미만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p>IV. 과징금 산정 기준</p> <p>1. 산정기준</p> <p>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p> <p>1)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중대성의 정도</th> <th>판단기준에 따른 산정점수</th> <th>부과기준율</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 <td>2.4 이상</td> <td>1.8% 이상 2.0% 이하</td> </tr> <tr> <td>중대한 위반행위</td> <td>1.6 이상 2.4 미만</td> <td>1.5% 이상 1.8% 미만</td> </tr> <tr> <td rowspan="2">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 <td>1.3 이상 1.6 미만</td> <td>1.0% 이상 1.5% 미만</td> </tr> <tr> <td>1.3 미만</td> <td>0.1% 이상 1.0% 미만</td> </tr> </tbody> </table> <p>2) ----- ----- -----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중대성의 정도</th> <th>판단기준에 따른 산정점수</th> <th>부과기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 <td>2.4 이상</td> <td>4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td> </tr> <tr> <td>중대한 위반행위</td> <td>1.6 이상 2.4 미만</td> <td>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td> </tr> <tr> <td rowspan="2">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 <td>1.3 이상 1.6 미만</td> <td>2억5천만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td> </tr> <tr> <td>1.3 미만</td> <td>5백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td> </tr> </tbody> </table> <p>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p> <p>1) ----- -----</p>	중대성의 정도	판단기준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1.8%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1.5% 이상 1.8%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3 이상 1.6 미만	1.0% 이상 1.5% 미만	1.3 미만	0.1% 이상 1.0% 미만	중대성의 정도	판단기준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4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3 이상 1.6 미만	2억5천만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	1.3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8% 이상 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 이상 0.8% 미만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중대성의 정도	판단기준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1.8%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1.5% 이상 1.8%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3 이상 1.6 미만	1.0% 이상 1.5% 미만																																											
	1.3 미만	0.1% 이상 1.0% 미만																																											
중대성의 정도	판단기준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4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3 이상 1.6 미만	2억5천만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																																											
	1.3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
중대한 위반행위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2)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 1차 조정

가. 일반원칙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행위에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생략)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위반사업자등이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

중대성의 정도	판단기준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25% 이상 14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2 미만	105% 이상 12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70% 이상 105% 미만

2) -----

중대성의 정도	판단기준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2 미만	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5백만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

2. 1차 조정

가. 일반원칙

----- 100 -----

나. (현행과 같음)

다. -----

1) ----- 5년간 1회 -----

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신 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범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범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3. 2차 조정

가·나. (생략)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생략)
- 2) 위반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

----- 2점 -----
----- 2회 -----
-----.

가)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범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

나) ----- 5년간 -----

----- : -----
50 초과 100분의 70 ----

다) ----- 5년간 -----

----- : -----
70 초과 100분의 90 ----

라) ----- 5년간 -----

----- : -----
90 초과 100분의 100 ----

3. 2차 조정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현행과 같음)
- 2) 위반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

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고 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일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고 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이상일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모두 보상한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3) 조사·심의협조 등

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의한 감경

가) -----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상당부분 보상한 -----

----- : -----

<삭 제>

<삭 제>

3) 조사·심의협조 등

가) ----- 조사·심의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만,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함) : -----

<삭 제>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만,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함) : 100분의 10 이내

4) (생략)

5) 위반사업자등이 외부기관의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100분의 10 이내

6) ~ 8) (생략)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삭제>

6) ~ 8)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의무적 조정과징금	2.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정	나. -----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1) -----
과거 <u>3년간</u> (신고사건	----- <u>5년간</u> -----
의 경우에는 신고접수	-----
일을, 직권조사 사건	-----
의 경우는 자료제출	-----
요청일, 이해관계자	-----
등 출석 요청일, 현장	-----
조사일 중 가장 빠른	-----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하 같다) <u>2회</u> 이상	----- <u>1회</u> -----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
이상을 포함하되	-----
과태료 부과 또는 과	-----
태료 부과 대신 경고	-----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를 받고 위반횟수 가	-----
중치의 합산이 <u>3점</u> 이	----- <u>2점</u> -----
상인 경우에는 <u>3회</u> 조	----- <u>2회</u> -----
치부터 다음과 같이	-----
기본과징금을 가중한	-----

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위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
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100
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범위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
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인 경우: 100
분의 40 이내

<신 설>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범위로

--.
(가) ----- 5년간 1회

----- 2점
-----: ---
----- 40 초과 100
분의 50 -----

(나) ----- 5년간 2회

----- 3점
-----: ---
----- 50 초과 10
0분의 70 -----

(다)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범위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
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인 경우: 100
분의 70 초과 100
분의 90 이내

(라) ----- 5년간 ---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
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인 경우: 100
분의 50 이내

(2) (생략)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한도
위 가. 및 나.에 따라 가중되
는 금액은 이를 합하여 기본
과징금의 100의 50 범위 내
이어야 한다.

라. (생략)

3.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 (생략)

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
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
경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로 인한 소
비자피해를 전액 보상
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
거한 경우 : 100분의 2
0 이상 100분의 30 이
내

(2) 위반행위로 인한 소

-----:
----- 90 초과 100

분의 100 -----

(2) (현행과 같음)

다. -----

----- 100 -----
-----.

라.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 상당 부분
보상하거나 피해의 원
상회복 -----
----- 상당 부분 -----
----- : ----- 10 --
--

(2) 위 (1)의 행위가 조사

비자피해를 50% 이상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
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로 인한 소
비자피해를 50% 미만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
의 효과를 일부 제거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 (생략)

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는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삭제>

다. (현행과 같음)